

순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

제정 2015 .6. 10.

개정 2018 .9. 12.

개정 2019 .9. 1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14조의 4에 따라 이 대학교 학생 군사교육단(이하 “학군단”이라 한다)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(이하 “후보생”이라 한다) 군사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학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
2. 후보생 선발업무
3.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
4.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
5. 그 밖에 후보생 관련업무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3조(설치) 학군단 및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과 학군단장으로 하며, 필요시 장교 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③ 학군단 훈육관을 간사로 한다. <2019.9.10. 신설>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
2. 이 대학교에서 학군단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에 관한 사항
3.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후보생의 교육

제7조(교육담당) ① 학생군사교육은 이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.

② 국방부에서 이 대학교에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이 대학교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체통의 지휘를 받는다.

제8조(군사학 교육) ① 후보생의 교내교육은 총장 책임 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향상 및 인격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.

-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.
-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선택과목으로 2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, 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이 대학교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.
- ④ 후보생이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하여 이 대학교 졸업 후에도 미 이수 군사학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 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제9조(입영훈련 교육) ① 후보생이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기 위해 군부대에 위탁하여 입영훈련 교육을 실시한다.
 ② 이 대학교는 후보생의 입영훈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.

제4장 행·재정적 지원

제10조(홍보업무) 이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.

제11조(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) 이 대학교는 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군사교육요원 사무실 및 편의시설
2. 군사학 강의실 및 교육장비와 보조재료
3. 후보생 병영생활지도실 및 자치위원실
4. 후보생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
5. 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, 교보재 창고
6. 학교버스 및 그 밖에 시설, 장비 지원

제12조(예산지원) 이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장 후보생 후생복지

제13조 (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)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(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)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. <개정 2018.9.12.>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.

부 칙<2015. 6. 1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910호, 2018.9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9. 1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